
제3차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제3차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 방안"

- 일시: 2008. 11. 7(금) 16: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 발표자: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정기선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개발실장)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 방안

최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nuni85@naver.com

1. 머리말

오늘날 인권은 대단히 인기 있는 개념으로 좌우 이념과 사상을 떠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일단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 또는 “지배적 이념”이 되었다. 특히 인권은 20세기 후반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전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지구적 가치’의 지위를 확보했다. 인권을 부정하면 사람으로 취급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자의 권리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문화주의”를 모토로 외국인 이주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동화주의를 다문화주의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 과정에서 다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이 왜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의 다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적 권리를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로 보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동화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다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다문화적 권리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인권(Human Right)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이다. 그런데 권리는 원래 영어의 right를 번역한 용어다. 영어의 rights에는 “도덕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19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권리라는 말 대신에 정직(正直)이나 염직(廉直)이라는 용어가 righ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권(權) 또는 권리라는 용어가 right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right라는 용어에 올바른

것과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권리가 자연법적 연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다음 장에서 우리는 인권의 자연법적 연원을 살펴볼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 아니라 자연(이는 절대자 또는 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에 의해 규정되며, 보편적으로(다시 말해 동일한 모든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 이로부터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이고 이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right)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다. 자연법은 라틴어로 *jus naturale*였는데, 여기서 자연법(*natural law*)과 구분되는 자연권(*natural right*)라는 개념이 근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분리되었다. 서양의 인권 개념은 이처럼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어떤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이봉철, 2001; 조효제, 2007).

2) 시민권(Citizen Right)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신이 내려준 고정불변의 질서대신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세속적인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던 계몽사상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자유 또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간을 그러한 질서의 전제이자 토대로 제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몽사상가들은 천부인권설(또는 자연권설)에서 이러한 권리의 주체인 근대적 인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러한 인권 사상의 발전은 근대 사회의 철학적 도덕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이든 하늘이든 신이든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근대 국가였다. 시민 혁명은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몽주의자들의 인권사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헌법, 정부와 국가를 만들어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대 국가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한 시민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을 뿐,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실 역사 속에서 인권은 시민권(*citizen right*)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탄생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회가 1789년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인데 여기서 인권(*the Rights of*

Man)은 시민권(the Rights of Citizen)과 동일시되고 있다 (Morange, 1999).

이런 맥락에서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적 기구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 따라 근대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시작했지만, 근대 국가가 실현한 인권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우선 계몽주의자들이 제시한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근대 국가는 자국의 시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인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여성은 그 시민권에서조차 배제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여성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권이 도덕적-당위적-추상적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였다면, 시민권은 그것의 제도적-법적-현실적 보장이었으며, 시민권의 발전은 다시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한 시민권은 추상적 논의에 불과했던 인권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 했던 인간의 권리의 문제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슬람계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히잡(hijab)을 쓰고 갈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교분리, 남녀평등과 종교의 자유 및 다문화적 권리라는 민주사회의 주요 원칙들이 충돌하는 인권 또는 시민권과 관련된 현대 사회(특히 다문화 사회)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계몽주의자들의 인권 사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계몽주의자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갈등과 논쟁은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반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국가들이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권리도 내용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시민권은 특정한 국가가 자국의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인권이므로 시민권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각 나라의 민주발전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지구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권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구 시민권이 실현된다면 이상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이 제도적으로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일 뿐이며 지구 정부가 제도적으로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 세기가 필요하다.

2.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과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1)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

천부인권설이 프랑스혁명 이전부터 발전해 왔지만, 하늘이나 신 또는 자연이 인간에게 권리를 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는 근대 국민 국가에 의해 시민권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장되었다. 국민국가는 문화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일치, 다시 말해 국가의 문화적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극히 예외적인 한두 개 국가를 빼고 거의 모든 국민국가가 이러한 지향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국민국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국민은 문화공동체를, 국가는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처럼 근대 국가가 국민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그것이 탄생했던 시기 서유럽의 역사적 조건 때문이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당시 사회변동의 핵심적 동력이 되었던 자본주의는 가능한 한 더 넓은 상품 시장과 이동 및 대체가 능한 따라서 자유롭고 동질적인 노동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국가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당시 대체할 수 있는 동질적 노동력을 생산해 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던 최첨단 대중매체는 신문과 책 등 활자 인쇄물에 지나지 않았고 이러한 매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통망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상품 및 노동 시장과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는 기존의 문화적 동질성에 의존해야 했고, 그 결과 시장과 정치공동체는 지리적 특성과 그것에 의해 구획된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구획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던 신성로마제국이 종말을 고한 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략 200년 동안 유럽에 하나의 통일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의 경계는 문화적 공동체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게 되었고 국민국가는 전형적인 근대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영국을 선두로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이 국민국가 체제에 편입되었다.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신대륙으로 팽창해가자 국민국가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1919년 성립된 베르사유 체제는 국민국가를 세계질서의 기본 단위로 승인했다. 따라서 근대적 세계에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은 우선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했다. 특정한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지 못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거나 자신을 시민으로 보호해 줄 국가를 건설해야만 했다. 따라서 1차 대전 이후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식민지·반식지의 주민들 사이에 민족주의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를 형성한다는 민족주의는 터무니없는 이념적 빈곤

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이 될 수 있었다.

국민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국민국가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는 시민권 제도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시민의 범위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여권과 다양한 신분증, 그리고 국민등록제도가 개발되어 자국 시민들과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과 자국 시민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민국가는 국제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국의 시민과 외국인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즉, 1930년 헤이그 협약은 무국적자와 함께 이중국적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했고 이것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베르사유 체제를 뒷받침했다.

2) 국민적 시민권 제도와 국민적 정체성 형성

근대 국가의 성원은 권리의 주체로서 국민(national) 또는 시민(citizen)으로 불린다. 이와 달리 봉건적 국가와 절대 왕정 국가 같은 전근대적 국가의 성원은 통치의 대상이나 국왕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백성 또는 신민(subject)이라고 불린다. 신민은 국가에 대해서 조·용·조(租·庸·調) 등의 의무는 가지지만 권리는 없는 존재였다. 근대 국가를 통해 통치 대상에 지나지 않던 신민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가 바로 시민권 제도다. 근대 국가는 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민의 경계를 확정하고, 조세제도와 모병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 곧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기본권, 참정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과 국민 정체성을 형성했다. 평등한 시민권과 문화적 동질성은 국민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게 했으며, 국가 공동체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진 국민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국민이라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y)하게 만든 결정적 조건이었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가 국민 정체성과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권 제도를 근대적 국민 정체성의 기초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민 정체성 형성 과정은 국민국가가 외국인과 자기 국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외국인을 소유권, 선거권, 피선거권, 사회보장 등 자국의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기 위해 신분증과 등록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제 더욱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국의 국민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자국의 시민들

에게만 신체의 자유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와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 문화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시민권 제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시민권 제도에는 신분등록제, 시민들 사이의 법적 평등, 표준어 교육, 역사 및 지리 교육, 전통 문화 보호제도, 상호부조와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 제도는 평등한 기회, 법적 지위,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 공동체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표준어 보급과 전통적 대중문화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 언론 출판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시민권 제도가 근대적 국민을 형성하고 재생산한다.

3)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발전

마셜(Marshall, 1964)은 사회적 소수자의 투쟁이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그는 특히 노동자계급이 영국에서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셜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시민권 제도의 발전 과정은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8세기 영국에서 시민권은 자유권적 기본권(civil rights)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세기에 시민권은 정치권(political rights)을 포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시민권은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시민권이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시민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했다. 즉,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으나, 20세기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권 제도는 경쟁으로 생겨난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가 개인주의, 보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맹신하고 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 현실적 요구 때문에 계급이라는 시민들의 경제적 소속 집단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시민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인정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었으며, 노동권과 최저생활보장권 등이 시민권에 포함되었다.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 사상은 특권층에 대한 반대를 통해 발전했었고 시민을 출신 계급, 지역, 인종, 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인류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계급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사회권을 처음으로 도입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계급 차별적’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따라 사회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시민권 제도의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은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3. 문화권 개념의 발전

1) 다문화적 권리의 전제로서의 집단인지적(group-differentiated) 시민권

다문화적 권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을 뛰어넘어 집단인지적 권리라는 개념이 발전한 것이었다. 집단인지적 권리 개념이 탄생하는 데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노동자계급에 이어 페미니스트들이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현실과 유리된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에서 시민권은 보편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약적인 관계, 시장에서의 교환, 그리고 개인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권은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장에서 교환할 것이 없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권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은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는 여성을 실제적으로는 무권리 상태에 버려두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는 남성들과는 달리 모성, 양육, 섹슈얼리티, 자기 몸의 통제할 권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일본에서 여성들은 제국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받았고, 현대 미국에서도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임신·출산 등 재생산권, 임신 선택권은 현재 여성들이 현실 생활에서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여성의 특성, 여성의 가치, 여성의 활동, 여성의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는 시민권 제도를 구축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이처럼 여성들에게 필요한 권리들의 목록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시민상과 시민의 덕성을 상대화하려는 노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가부장적 구습, 남녀차별적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 고용,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

문에 법적·제도적 차별만 없다면 여성이 남성과 같이 완전한 시민권(full citizenship)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들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접근이 결국 교육, 고용, 승진 등에서 남성적 덕목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실 상 여성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내모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은 육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다르며, 남성과 여성은 다른 권리를 가져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종합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민권 이론에서 여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배려, 돌봄, 그리고 상호의존은 가족생활과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적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것 또는 적어도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여성의 특성이 시민권의 핵심적 전제인 이성적 사고나 군사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감정통제나 과묵함, 육체적 힘과 용기 등 남성적 특성은 시민이 갖춰야 할 덕성으로 간주했다. 페미니즘은 여성문화와 여성성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gender)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상호의존과 돌봄의 가치를 시민권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이 여성의 몸(body)를 근거로 여성들의 시민권을 제한해 왔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인류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몸을 고려하지 않는 시민권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시민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민권은 이제 여성들이 가진 차이와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남성중심의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비판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사실 영국에서의 1867년 개혁법은 정치권을 성인 남성 노동자의 35%에서 4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의 심의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핵심적 쟁점은 계획된 시민권의 확대가 영국 시민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훼손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원의 한 토론 참가자는 가장들에게 정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보다 덜 영국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여성에게 정치권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자연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하고 영국 시민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영국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 1942년 보고서를 썼던 베버리지조차 여성은 신체에 따른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이 실업에 처한 경우 남성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은 보편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정신적·문화적·신체적 특성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

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던 것이다. 영(Young, 1998) 같은 페미니스트들 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인지적 시민권이 더욱 공정한 시민권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2) 다문화적 권리

다문화적 권리는 크게 2가지 의미를 지닌다. 원래 다문화적 권리는 문화적으로 단일한 국민국가의 시민이 주류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국가의 시민 중에서 문화적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그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국민국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적 통일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표준어를 확정하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급하고 관공서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언어적 소수자에게 다문화적 권리는 사실 상 교육을 통해 다수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수자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곧 “동화될 권리”에 불과했다. 동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결함으로 차별받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문화 사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소수자의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발전시킨 집단인지적 권리의 개념은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집단인지적 권리는 집단들은 노동자계급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완전한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배제되는 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집단인지적 권리 중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권리를 다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문화적 소수자의 다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다문화적 권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심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로 특징 지워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정상 시민 모델에 따라 무시되거나 억제되었다. 예를 들어 서유럽과 미국에서 정상 시민이란 특정 국가의 민족 문화를 체화한 장애가 없고 이성애자인 백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상 시민에서 벗어나는 장애인, 유색인종, 여성, 원주민 등은 배제되고 주변화되거나 동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외되었던 이러한 집단들은 정상 시민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거나, 주

변적 존재로 취급하고, 동화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다름과 정체성을 포용할 새로운 시민 모델과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시작되었다. 학의 집에 초대받은 여우와 여우의 집에 초대받은 학에 관한 이솝의 우화는 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대한 요구가 본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여우에게 맞춰진 사회에 들어간 학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사회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다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다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다문화적 권리를 정치공동체가 보장하는 것은 전에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 집단에게 교육과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통 문화(common culture)’와 ‘공통 정체성(common identity)’, 그리고 ‘상식 또는 양식(common sense)’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통합(inclusion)에 대한 요구이다. 배제된 집단들은 더 큰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accommodation)은 통합을 촉진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소수자 집단에게 다수자들이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다문화적 권리(특정 소수자들에게 공동체로서의 대표권을 인정하여 의회에 의석을 배당하는 일 등)은 국가의 단합(unity)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참여와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적 권리는 지구화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다문화적 권리의 주요 내용

김리카(Kymlicka, 1995)는 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문화적 권리는 소수 종족을 보호하는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1)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 (2) 다문화권과 (3) 차별보상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은 소수 종족이 스스로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적 관할권 또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소수 종족이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킬 권리다. 다문화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별이나 불이익의 위험 없이 자신들의 신체적·문화적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다. 마지막으로 차별보상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에 소수 종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소수자 집단에게 일정한 특권

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소수 종족에게 국회 의석의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나 소수 종족의 성원들에게 대학 입학과 공무원 취업 문턱을 낮춰주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차별보상권과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권이나 집단 대표권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소수 종족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 집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empowerment) 느낌을 가지게 하고, 구체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정치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 종족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권리가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소수 종족을 지배하기 위한 방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 종족에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veto power)이나 분리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가 소수 종족의 거부나 분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 종족이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 대표권과 자치권은 정책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집단 대표권과 자치권은 소수 종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수 종족이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해 소속감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4. 결론: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권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에 자치권 등은 아직까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적 소수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보상권, 다문화적 권리와 집단대표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대표권이다. 왜냐하면 집단대표권이 실현돼야 수요자 중심에서 다문화적 권리와 차별보상권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단대표권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석 중 일부를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먼저 생겨나야만 한다. 따라서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대표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인지적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윤인진과 김상학의 연구(200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장애인을 제외한 집단에게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같은 집단인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권리 개념에 따라 집단인지적 권리를 일종의 역차별로 보는 가치관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집단인지적 권리를 수용하는 태도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자나 영주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힘을 모아 집단인지적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의석 중 일부를 다양한 소수집단에게 할애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윤인진·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222-248.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Garden City, N.Y.: Doubleday.
- Morange, Jean. 199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변해철 역. 서울: 탐구
- Young, Iris Marion. 1998.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Pp. 263-290 in *The citizenship debates: a reader*, edited by G. Shafi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